

# 프랑스의 사진·영상 보도 관련 주요 동향

박진우

프랑스 파리5대학 사회학과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조 및 동 대학원 석사
- 프랑스 파리 5대학 사회학과 DEA 졸업
- 한국언론재단 프랑스 통신문(2003년 ~ )
- 현(現) 프랑스 파리 5대학 사회학과 박사과정 (사회학 및 언론학 전공)
- 논문 : 「프랑스의 언론법제 : "언론 자유의 위배"에 대한 법적 규정」, 「프랑스의 언론보도 책임과 피해구제제도」 외 다수

## 1. 들어가며

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초상권 보호의 권리·의무의 문제는 오늘날 미디어를 둘러싼 법적 논쟁의 한 복판에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이다. 미디어의 발전과 그 시장의 확대는 불가피하게 더욱 많은 사람들의 미디어 노출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제는 정치인이나 소위 '유명인들' 및 그 주변의 관련자들 범위를 넘어서, 이들과는 전혀 무관한 일반인들의 미디어 노출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0년대 이후 전 세계 방송시장의 메인 스트림으로 등장한 각종 리얼리티 버라이어티 쇼 장르의 핵심은 바로 이들 연예인들 및 일반인들의 "생생한 삶", 그러니까 달리 말해 '사생활'의 현장을 직접 카메라에 담는 것이었다. 방송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은 또한 '스타'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자신들의 존재 이유로 삼는 수많은 매체들을 출현시켰다.

프랑스 사회는 본격적인 대중문화, 미디어 산업의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했던 1970년대 초반에 위와 같은 양상 속에서 생겨날지 모르는 문제들에 대한 법

제를 마련한 바 있다. 1970년 7월 9일에 제정된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 내용을 추가한 민법 제9조는 지금까지 약 40여 년 동안, 미디어 보도를 둘러싼 각종 사생활, 인격권, 초상권 보호에 관한 모든 법제의 준거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제도의 원칙은 대상이 유명인이건 일반인이건 어떤 형태로든 미디어가 그 사람의 사생활이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의 '단호함'은 양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우선 그동안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이러한 단호함이 바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초상권 보호에 대하여 프랑스 사회가 가장 엄격한 언론법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사회적 의제인 미디어 산업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2000년대 이후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매체 환경 속에서, 기존 법제의 '엄격함'만으로는 더 이상 해결하기 곤란한 수많은 난제들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새로운 제도적 보완책의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단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현실의 변화 속에서 실증법이 점점 무력화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

계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초상권 보호에 대한 논쟁은 바로 이러한 단계를 대표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염두에 두고, 프랑스에서 초상권 - 사진 및 영상 보도 - 을 둘러싼 법제 관련 논쟁의 양상들을 간단하게 다루어 보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 이미 프랑스의 미디어 산업은 포화 상태이다. 수많은 인쇄, 방송 매체 및 새로 등장한 전자 매체들은 매일매일 대중의 관심을 받는 유명인들이나 기타 일반인들의 '얼굴'을 다양한 매체 형태로 새롭게 재생산하고 있다. 이들이 다루는 정보들은, 하지만 프랑스의 현행 법제상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기 일쑤이며,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 결과 개인의 초상권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법 분쟁의 건수는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의 법조계는 초상권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 집행에 있어서의 '균형성(proportionnalité)'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바로 이러한 최근의 변화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 2. '초상권'을 둘러싼 법규의 근본 원리

'초상권(droit à l'image)'의 문제는 오랫동안 프랑스의 언론법제에서 근본적으로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졌다. 법정에서 다루어지는 사생활 침해 보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재판들은 '사생활 보호'와 '초상권 보호'를 부속 항목들로 함께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많은 경우 초상권은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침해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이미지'를 어떻게 불법적으로 활용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문제를 둘러싼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지난 2001년 이후 초상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우선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초상권 관련 법제의 일반 원리

앞서 언급하였듯이 프랑스의 초상권 제도는 지난 1950년 11월 4일자로 제정된 「인권 및 근본적인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Convention européenne de sauvegarde des droits de l'homme et des libertés fondamentales du 4 novembre 1950), 1970년 7월 9일에 등장한 「사생활 보호에 대한 법률」 그리고 이 법을 통해 개정된 민법 제9조(Article 9 du Code Civil)에 그 근거를 둔다.

1950년 유럽 협약은 초상권을 해당 유럽 협약을 체결한 유럽연합 회원국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에게 부여된 사생활 존중 원칙의 일환으로 다룰 것을 명시한다. 이 협약의 제8조("모든 개인은 자신의 사생활 및 가정생활 그리고 자신의 거주지와 교류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이후 초상권 문제를 다룬 모든 국제적 협약 그리고 각국의 판례 근거로 오랫동안 기능해 왔다. 그러니까 사생활 존중의 원칙은 모든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이며, 따라서 이 원칙에 근거하여 사적인 장소나 사적인 활동을 담은 이미지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배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사생활 보호에 관한 원칙 위반과 동일하게 다루어진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요인은 결국 "당사자의 동의"인 셈이며, 이것이 결여되었을 경우 해당 이미지의 배포에 대한 책임이 생겨난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특히 영미권 국가들의 경우에는 판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초상권의 문제는 이른바 '프라이버시(privacy)권'과 체계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프랑스 법원은 초상권을 '자신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를 무단으로 배포하는 것에 대해 특정한 조건 하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된 일종의 특권'으로 간주해

있다.

프랑스의 사례 역시 마찬가지이다. 프랑스 법정 역시 초상권을 자신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를 무단으로 배포하는 것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 하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된 일종의 특권으로 간주한다. 1995년 5월 23일에 공표된 파리 고등법원의 한 판례는 이 원칙을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 및 해당 이미지의 이용에 대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허가하지 않는 한 그것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말로 재확인한바 있다.<sup>1)</sup> 이 판례를 근거로 현재 프랑스의 초상권 관련 법제는 해당 자연인으로부터의 ‘명시적인 허가’의 내용을 대략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규정한다.<sup>2)</sup>

- **촬영의 동의** : 여기서 ‘동의’의 범위는 촬영된 해당 이미지 그 자체 뿐 아니라, 이 이미지가 공개를 목적으로 한 것일 경우 그것의 공개에 대해서 까지 포괄한다. 만약 촬영에 동의하더라도 해당 이미지의 공개를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미지의 공개는 금지된다.
- **촬영 대상자 관련** : 만약 공인이나 유명인 혹은 그들의 가족의 모습이 담긴 이미지일 경우 당사자의 동의 하에 촬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인터넷상으로 몽타주 이미지(합성사진)를 게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촬영** : 사진 속에 담긴 인물이 공공장소에 위치할 경우, 만약 사진

촬영자의 원래 포커스에서 벗어난 주변에 해당 당사자의 모습이 담긴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Civ. 1re 12 décembre 2000, Bull. civ. I, n° 322).

- **동의를 형식** :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허락을 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위에 해당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이미지의 배포는 초상권 침해로 간주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만 한다. 우선 민법 제9조는 해당 이미지를 무단으로 배포함으로써 초상권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법정은 이 경우 우선 해당 매체의 배포 혹은 방송을 금지시킨 다음, 언론사로부터 해당 이미지 및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압류할 수 있다. 해당 이미지가 인터넷을 통해 배포된 경우, 법정은 인터넷 사이트 책임자에게 해당 이미지 혹은 웹페이지 전체를 삭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해당 이미지가 공공질서의 위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한다.

- **특정인의 사적인 공간에서의 모습을 무단으로 녹음 혹은 촬영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법 제226-1조에 의거, 징역 1년 혹은 4만 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 위의 형태로 녹음 혹은 촬영된 것을 보관하고, 또 어떤 형태로든 대중들이 알 수 있게끔 방치하거나 공

1) 파리 고등법원, 1995년 5월 23일자 판결 (CA Paris 1re ch., 23 mai 1995, D. 96)

2) Christophe Bigot, ed., *Médias et vie privée*,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7, pp. 104-105.

개하는 경우, 형법 제226-2조에 의거, 징역 1년 혹은 4만 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 어떤 유형을 통해서든 해당 녹음이나 촬영된 것을 공개하면서,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경우, 형법 제226-8조에 의거, 징역 1년 혹은 1만 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 (테러리즘) 공격에 의한 희생자의 존엄성을 해치는 이미지 사용에 대해서는, 1981년 7월 29일자로 제정된 「언론자유에 관한 법률」 제35조 부속조항에 의거, 1만 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 (2) 당사자의 '동의(accord)'의 두 가지 유형

그렇다면 언론사가 초상권을 위배하지 않고 자신들이 촬영한 이미지를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위에서 살펴본 대로 법률상으로는 당사자의 "서면 허가"를 받을 경우에만 그 이미지의 이용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대단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언급한 1995년 파리 지방법원의 판례는 이에 대하여 언론사가 "명시적인 동의(autorisation expresse)" 그리고 "암묵적인 동의(autorisation tacite)"를 얻는 경우에는 초상권 위배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다.

① 명시적인 동의 : 앞서 언급하였듯이, 서면으로 작성된 동의서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된 내용이다. 만약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가 작성한 동의서를 받아야만 한다. 또한 해당 동의서 속에는 이미지의 배포의 유형과 형식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담겨 있어야만 한다.

사진 매체의 경우에는 그 규정이 조금 더 구체적이다. 1995년에는 만약 사진일 경우에는 배포 이전에 사진 촬영 자체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가 그 배포에 대한 동의와 함께 명시되어야만 한다는 판례가 다중 지방법원에서 마련된 바 있는데, 이는 촬영 당사자도 모르는 불법 촬영이 더욱 성행하면서 이에 보다 엄격히 대처하기 위한 법적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CA Dijon, 4 avril 1995, JCP 1996, IV 1528). 또한 사진 매체의 경우, 촬영된 사람이 설사 사진작가에게 촬영을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사진의 배포(사진이 신문에 게재되거나 방송 프로그램 속에 등장하는 것)를 허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또 다른 판례가 나온 바 있다.<sup>3)</sup>

② 암묵적 동의 : 그렇지만 사법부는 판례를 통해 설사 서면으로 된 명시적인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이것은 주로 공인들이 자신의 공적인 활동을 행하는 것을 촬영한 경우를 말한다. 법률적으로 이는, 즉 공인들의 공적 활동은 "이미지를 통해 대중들에게 전달되어야만 하는 정당한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4)</sup> 하지만 특정 사례가 과연 이러한 원리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수많은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으며, 프랑스의 사법부는 여기에 대해 대단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특정 사건의 재판을 맡은 판사가 사무실에서 전화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사건에 대한 배경 사진으로 삼아 게재한 언론사에 대하여, 법정은 해당 이미지는 설사 공공장소에서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3) 리옹 고등법원, 1996년 1월 11일자 판례 (CA Lyon, 11 janvier 1996), *Legipresse*, décembre 1996, n° 137-1, p. 147.

4) Roland Dumas, *Le droit de l'information*, Paris, PUF, 1996, p. 577.

프랑스의 초상권 보호에 대한  
법적 규칙 및 판례들은  
대단히 엄격한 편

판사의 직업적 활동과 직접적으로는 무관한 장면에 해당하므로 이는 초상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sup>5)</sup> 또한 유명 영화배우 카트린느 드뇌브(Catherine Deneuve)가 칸느 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파리 고등법원은 해당 사진이 설사 당사자가 영화제의 심사위원으로서 행사장에 참석하는 장면인 만큼 이것은 '공인의 공적인 활동'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사진이 영화제 관련 기사나 당사자가 출연한 영화에 관한 기사와는 무관한 기사에 일종의 '클리셰'로 실린 경우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초상권 침해 주장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sup>6)</sup> 이렇듯 '암묵적 동의'에 대한 법정의 해석은 대단히 엄격한 편이다.

### (3) 두 가지 판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프랑스의 초상권 보호에 대한 법적 규칙 및 판례들은 대단히 엄격한 편이다. 현실 속에서 이를 증명해 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자키네 대(對) 르 푸앙' 재판 그리고 '미셸 리브 대(對) Xodo' 재판은 초상권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프랑스 재판부의 판례 경향을 가장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sup>7)</sup>

#### ① 1984년 7월 4일자 대법원(파쇄원) 판결

1984년 프랑스의 주간지 <르 푸앙(Le Point)>은

“파이프 흡연자”에 대한 기사에서 “480가지 발암물질”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프랑스의 파이프 흡연자 모임의 회장인 자키네(Jaquinet)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파이프 흡연자 모임과 자키네 측은 즉각 이것이 자신의 초상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르 푸앙> 지를 출판하는 출판사인 SEBDO 사(社)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르 푸앙> 지 역시 자키네의 사진 네거필름을 자사에 양도한 사진통신사 라포(Rapho) 사에 대해 배상을 청구한 일이 있다.

SEBDO 사는 자키네의 손해배상 요구를 인정한 판결에 항소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자키네가 자신의 사진 촬영을 라포 사에 허가한 것은, 자신이 유명한 파이프 흡연자로서의 활동에 관하여 보도할 경우에 한해 자신의 사진을 복제할 권한을 준 것임을 상기시켰다. <르 푸앙> 지의 기사는 본질적으로 담배의 유해함을 '비난'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 기사에 당사자의 사진을 배치한 것은 결국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자키네 측은 라포 사에 대해서는 사진의 활용을 허락하였지만, <르 푸앙> 지와는 일체 동의를 위한 접촉도 없었음을 상기시켰다. 따라서 SEBDO 사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다.

#### ② 1990년 6월 12일자 대법원 판결

프랑스의 유명 배우인 미셸 리브(Michel Leeb)는

5) CA Paris 1re ch., 19 septembre 1995, D, 95, IR 238.

6) 파리 고등법원, 1995년 9월 12일자 판례 (CA Paris, 12 septembre 1995), *Legipresse*, mars 1996, n° 129-III, p. 21.

7) 아래의 판례들은 Christophe Bigo, “Droits sur l'image des personnes : une matière réorganisée”, *Gazette du Palais*, 18-19 mai 2007을 참조하였다.

1985년 10월 12일 프랑스의 유통업체인 Xodo 사의 두 매장에서 독자들과의 만남 및 사인회 행사를 열기로 합의하였다. 이 행사를 위해 Xodo 사는 3개 일간지에 미셸 리브의 사진이 들어간 광고를 대규모로 실었으며, 또한 그의 사진이 들어간 광고물을 대대적으로 배포하였다. 그런데 미셸 리브는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에 대한 그러한 상업적 이용을 허용한 적이 없으면서 예정된 사인회에 참석을 거부했다. 그리고 미셸 리브와 Xodo 사는 동시에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베르사이유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는 Xodo 사의 광고 행위가 행사를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인정하였고, 계약법 차원에서 미셸 리브가 광고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에 부주의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행사 광고에 대해서는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Xodo 사는 배우의 이미지를 출판하기 전에 허락을 구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미지 사용에 대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해 Xodo는 배우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법원은 베르사이유 항소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3. ‘초상권’ 관련 법제를 둘러싼 새로운 쟁점들

그렇지만 앞서의 논의에서처럼 ‘초상권(droit à l’image)’ 개념에 대한 판례들이 축적되면서, 또한 새로운 매체 환경의 도래 속에서, 최근 프랑스의 법 연구자들 및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이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요구도 점차 빈번해지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초상권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자신의 물리

적 외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으며,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사생활 존중의 권리 그리고 타인의 초상을 어떤 식으로든 침해하는 것은 불법 과실이라는 원리와 함께 인정받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 프랑스의 법체계 속에서는 - 앞서 언급된 1950년 유럽 협약의 규정 이외에는 - 초상권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정의가 들어있지는 않으며, 이를 시도한 적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 재판부나 법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과연 ‘초상권’이라는 것이 독립적인 법적 범주로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마저 서로 엇갈리고 있다.

#### (1) 초상권 개념의 이중적 성격과 ‘재산권화’ 경향

초상권이라는 개념의 본질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권리가 두 가지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작동한다는 점이다. 그 하나는 초상속 인물의 이해관계 보호 방식에 관한 것이다. 이른바 ‘초상권’은 권리자에게 속하는 고유한 권리인가, 아니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혹은 당사자에게 해를 끼칠 만한 그러한 조건 하에서 초상을 사용하는 이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적 범주인가? 사실 그동안 초상권 침해에 대한 처벌 판결에 대하여 프랑스의 일부 연구자들은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이들에게 민사 책임만을 부과하는 기존 원칙이 “훨씬 단순하고 엄격하다”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민법 1382조를 초상권 침해에도 적용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후자의 이들이 보기에 초상권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권리이지만 그러면서도 특수한 성격의 권리로서, 당사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의 초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소극적 권리(droit négatif)라는

새로운 매체 환경의 도래 속에서  
최근 프랑스의 법 연구자들 및 종사자들 사이에서  
초상권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요구 빈번해져

것이다.

최근의 판결 경향은 분명히 양자의 주장이 어떤 형태로든 실질적으로 수렴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쟁점은 민사 책임의 해결 방식은 일종의 문제 해결의 방법론이지, 그것이 곧 초상권 자체를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민사 책임의 해결 방법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각 개인이 자신의 초상의 제작과 배포에 대해 가지는 독점권의 인정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다. 그렇기에 당사자가 이 독점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상대방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이것이 초상에 대한 고유한 권리의 존재 여부를 증명해 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논란은 두 번째 쟁점, 즉 인물의 초상에 대한 일종의 '재산화(patrimonialisation)' 경향 속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현재 프랑스의 법 체계 - 즉 '초상권'에 대한 보호와 그것의 위배에 대한 민사 처벌 - 에서는 궁극적으로 이 권리가 각 개인에게 자신의 초상권을 일종의 재산권으로 부여할 것인가, 또는 초(超) 재산권적(extra-patrimonial) 성격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물론 인물의 초상에 대한 '상업적 거래'의 존재 및 그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는 바이다. 그렇지만 초상권을 둘러싼 소송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소송 당사자인 초상권자가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예 혹은 초 재산권적 가치의 침해에 항의하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당사자의 동의 없는 초상의 상업적 이용으로 인

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오늘날 양자는 서로 뒤섞여 있으며, 많은 경우 두 가지 모두가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향은 분명히 현대 사회에서 인물의 초상에 대한 재산화 경향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어쩌면 불가피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법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불가피하다.<sup>8)</sup>

그렇기에 프랑스의 많은 연구자들은 최근, 초상권 문제를 민법 제9조에 결부시킨 것이 너무 인위적이지는 않은지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19세기 이후 프랑스의 모든 판례들이 각자의 초상의 존중받을 권리를 신성시해왔으며, 이는 자신의 초상이 기록되거나 그것을 출판하는 것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의 핵심으로 삼아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상권은 사생활 보호 및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와 직접 결부되었으며, 그 결과 1970년에 민법 조항으로 삽입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최근의 초상권의 '재산권화' 경향은 분명히 사생활 존중권 침해와 관련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초상권이 재산권으로 간주될 경우,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한 논란은 결국 초상권자와 자신의 초상을 기록(촬영)하는 행위의 주체(화가, 사진사)의 권리 그리고 이를 배포하는 행위의 주체(언론사)의 권리 사이의 이른바 "권리의 충돌(Conflits des droits)"<sup>9)</sup>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2) 초상권에 관한 최근 판례들의 경향 변화

8) Emmanuel Gaillard, "La double nature du droit à l'image et ses conséquences en droit positif français", *Recueil Dalloz Sirez*, 1984, pp. 161-162.

9) Jean-Pierre Ancel, "La protection des droits de la personne dans la jurisprudence récente de la Cour de cassation", *Rapport de la Cour de Cassation, 2e partie, Etudes et documents*, 2000, p. 62

1990년대 이후 프랑스의 초상권 관련 판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바로 초상권의 '비상업적 이용' 형태에 관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만약 초상권이 특정인의 상업적 이용의 대상이 될 경우에 대한 판결의 원칙은 비교적 명확하였으며, 또한 이 경우에 판결 결과 역시 그러하였다. 그런데 명백하게 상업적인 성격을 가진 이용 형태가 아닌 경우, 과연 초상권 보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초상권이 이처럼 절대적인 권리인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신는 사람에 대해 항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여러 가지 판결들은 이에 대해 그만큼 '원칙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게 만든다. 궁극적으로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처벌의 원칙에 가까스로 도달하였을 뿐, 이를 제외하면 프랑스의 재판부는 초상권 분야의 수많은 법률 소송들에 대하여 사실상 앞서 언급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어떤 절대적인 원칙을 확립하지는 못하고 있다.

2001년 이후 이러한 상황은 가시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 이전의 판례에서 초상권 보호와 정보의 자유라는 두 가지 대립적인 원칙에 대하여 대단히 엄격하게 전자의 우위를 강조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점차 후자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큰 틀에서 정의하자면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는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 하에서 세부적으로 해당 이미지가 어떤 형태로 초상권 보호 및 표현의 자유 보호라는 두 가지 원칙에 각각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몇 가지 대표적인 판례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자.

### ① 상황 적합성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 증대

초상권 침해 소송의 경우, 그동안 해당 상황의 본질에 대한 고려와는 무관하게 해당 인물에 카메라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아니면 사건 현장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해당 인물이 본의 아니게 카메라 앵글 속에 들어와 있었는가에 대한 논란은 초상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런데 이 논의는 2001년 2월 이후, 상황 전체의 적합성을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으로 대체되고 있다.

1995년 7월 25일, 파리 중심부의 생 미셸(Saint-Michel) 전철역에서 북아프리카계 근본주의자들의 테러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시사주간지 <파리 마치>는 사건 직후 현장에서 쓰러져 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모습을 담은 일련의 사진 화보를 게재하였는데, 잡지사가 사진 속에 등장하는 시민들로부터 사진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았을 리 만무한 상황에서 <파리 마치>는 즉각 초상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당하였다. 당시 이 사건의 원심 판결은 인권과 기본권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 제10조와 민법 제9조 및 16조에 의거, 정보의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는 사건에 연루된 인물의 이미지 출판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한에서만 허용되므로, <파리 마치>의 생 미셸 역 테러 사건의 희생자였던 X 부인의 사진 출판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2001년 2월 20일, 프랑스 대법원의 이 사건에 대한 판례는 이와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결정적이다.<sup>10)</sup> 요약하자면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필요성이 사건의 해설을 정당화한다면,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사진을 출판한 것 역시 이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사진들이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희

10) Chambre civile 1, audience publique du 20 février 2001.

초상권 보호와 정보의 자유는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전제 하에 세부적으로 해당 이미지가 두 권리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살피는 방향으로  
판례 변하고 있어

생자 시민들 하나하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고 따라서 '센세이셔널' 한 측면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외설(indécence)' 추구의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존엄성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파기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보의 자유에 관련된 사안이므로 출판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이 원고 패소 판결과 함께, 같은 날 대법원은 파리의 생 베르나르(Saint-Bernard) 교회의 점거자들을 해산하기 위해 경찰 진압작전에 참가한 한 경찰관이 제기한, 즉 경찰의 진압에 항의하는 어느 운동단체의 전단지에서 자신이 진압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실고 있는 것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소송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이유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핵심은 그동안 초상권 침해 판결의 오랜 기준으로 사용되어 온, 이른바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추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한 기준을 법원이 포기한 것이다. 이를 대신하여, 이른바 "이미지 출판의 상황의 적합성의 평가(l'appréciation de la légitimité du contexte de la publication de l'image)", 그러니까 인물의 초상에 대한 출판의 자유를 누리기에 해당 상황이 적절한지 여부에 따라 초상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정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초상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호의 원칙에 대한 문제 제기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 ② 새로운 언론 자유의 영역 창출 여부에 대한 검토

초상권 보호 원칙의 상황 적합성에 대한 요구는 당연히 사생활 보호 관련 법제를 적용할 때에도 보

다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따져보아야 한다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특정한 이미지가 과연 합법적으로 배포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 조건에 따라 대단히 상반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이미지의 배포가 대중적으로 새로운 "언론 자유의 영역"을 창출한다고 인정받을 경우 해당 이미지의 배포는 궁극적으로 합법적인 것으로 추인받을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모호하고 유동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법적 판례들은 상당히 많으며, 여기에 대해 프랑스 재판부는 대단히 구체적인 판정 기준들을 들이밀고 있다.

예컨대 모나코 왕가의 출산 소식을 다룬 기사와 함께 게재된 사진에 대하여, 2004년 2월 19일 프랑스 대법원은 특정 사건이 정치적인 중요성, 혹은 왕실 내부 차원에서 큰 중요성을 가진 사건일 경우, 해당 사건을 보도한 사진 영상물은 "정보의 긴급함(nécessité de l'information)"이라는 요건에 부응하며, 따라서 대중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주간지 <프랑스 디망쉬(France-Dimanche)>의 1999년 7월 9일 ~ 15일자의 표지에는 모나코의 왕녀 카롤린의 출산에 대한 기사가 실린 바 있다. 잡지 안에는 당사자가 공공장소 - 1999년 5월 모나코에서 자신이 주관한 32회 국제 꽃 전시회에서 찍힌 세 장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모나코 왕실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은 해당 사진을 찍은 Y에게 1프랑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할 것과, 해당 출판물의 판매 정지 처분을 명령하였다. 또한 왕실의 출산은 정보의 필요성에 부응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프랑스 디망쉬> 측은 출산 소식을 다루면서 출산 준비

및 장소에 대한 세세한 사항을 보도하였는데 이것이 어떤 정보의 필요성에도 정당화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로 인해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해당 보도물에 대한 상세 조사를 통해, 사건을 보도한 <프랑스 디망쉬>와 Y 기자가 설사 사생활의 일부를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법 제9조에 명시된 사생활 존중의 원칙에 따른 금지조항을 침해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단지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 파기 결정을 내렸다.<sup>11)</sup>

또한 2001년 8월 8일 영화배우 장 폴 벨몽도(Jean-Paul Belmondo)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그 소식과 현장 사진을 게재한 8월 23일자 시사주간지 <파리 마치>에 대하여 제기된 초상권 침해 소송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사진은 배우가 응급구조반의 들것에 실려서 구호 헬리콥터에서 내려지는 장면을 찍은 것으로, 1심에서는 사진에서 동료들과 구조 요원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배우의 모습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또한 공항에서 망원 카메라로 당사자가 모르게 찍은 사진으로서, 사진이 배우의 사생활의 가장 내밀한 영역을 건드리는 “드라마틱한 상황”을 포착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배우의 교통사고 소식 및 현장 사진은 민법 9조에 규정된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금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이미지의 출판은 대중에 대한 정보전달이라는 측면에서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해당 사진과 그것을 설명하는 기사가 직접 관련된 것이며, 공공장소에서 찍혔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 아니며, 또한 유명 배우가 당한 사고인 만큼 사건

의 ‘시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기사 및 사진들이 민법 제9조에 명시된 제약 규정들을 지키는 한에서 사생활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보도 사실 그 자체가 선형적으로(a priori) 불법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궁극적으로는 법정에서 인정받는 ‘언론 자유’의 범위가 조금씩이나마 점차 넓어지는 양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2001년 7월 12일 대법원은 “언론의 자유의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조건 하에서는, 사회 현상들을 다루는 모든 일반적인 토론들을 어떤 형태로 보도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원칙을 내포한다”고 명시하기도 하였다. 물론 초상권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새롭게 인정받고 있는 언론의 자유는 물론 단순히 ‘사건’ 그 자체에 연루된 인물일 경우, 또 이미지가 순수하게 사건 보도에 관련된 경우에만 한한다. 즉 모든 범위의 정보라 할지라도 엄격한 의미에서 ‘사건’ 그 자체와 이슈 그리고 공중의 관심을 ‘정당하게’ 끌 수 있는 주제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정보들만이 여기에 관련된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초상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언론 자유의 영역을 조금씩이나마 늘려가려는 노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주목할만한 변화라고 하겠다.

### ③ 이미지와 그것을 묘사하는 정보의 결합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초상권 침해 여부, 혹은 특정 이미지 사용의 합법성 여부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바로 이미지와 그것을 묘사하는 정보 사이의 관계에 대한 평가 문제이다. 2001년 이후 프랑스 법정의 판례는 과거 이미지 포착 조건의 합법성 여부에

11) 대법원 판결, 2004년 2월 19일.

최근 프랑스 법원은 이미지와 이를 묘사하는  
정보 사이의 의미적 관계, 즉 의미를  
보다 중시하는 경향 보이고 있어

서부터, 점차 이미지와 이를 묘사하는 정보 사이의 의미적 관계(lien signifiant), 즉 의미(sens)를 보다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는 우선 해당 인물의 초상 보도가 과연 대중의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의 자유 실현에 해당되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이미지는 훼손되어서도, 왜곡되어서도 안 된다”는 원칙이 존중되고 있는가가 문제된다. 대법원의 최근 판결들은 만약 자신의 동의 없이 출판된 이미지가 위의 두 가지 기준을 통과할 경우, 동의의 부재가 자동적으로 이미지 출판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결론으로 귀착되고 있다.

그렇지만 아래 판례들이 증명하듯이,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특히 최근의 초상권 판례들 속에서 당사자의 동의보다는 의미의 왜곡 및 훼손 여부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물론 이를 판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미지의 존재 조건 그리고 이미지와 기사의 의미상 결합 여부에 대하여 사례별로 대단히 엄격한 검토를 행하고 있다.

- 1999년 5월 10일, 프랑스의 민영방송 TF1은 사이클 선수들의 약물복용 문제를 다룬 뉴스에서, 당시 약물복용 사건에 휘말린 당사자인 갑 부부와 그들의 아들이 경마장으로 나란히 들어가는 이미지를 기사의 배경화면으로 사용하여 내보낸 바 있다. 해당 부부는 이 이미지의 방영에 대해 항의하였고, 법정에서는 민법 제9조에 의거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TF1에 내려졌다. 2004년 6월 30일, 프랑스 대법원은 이 사건 관련 TF1 측의 항소에 대하여, 갑 부부의 모습이 촬영된 이미지가 과연 사이클 선수들

의 약물복용 문제를 다룬 뉴스의 주제에 왜 사용되었는지를 질문하면서, 또한 갑 부부의 아들이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해 본 결과, 이들 이슈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설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에서 당사자들의 허락 없는 방송이 이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론 내린 것에 대하여, 이미지의 내용을 따져 보아도 사건과 무관한 이미지의 방송으로 결국 이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원심의 판결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sup>12)</sup>

- 시사주간지 <파리 마치>는 2000년 12월 7일자 표지 커버 기사로 어느 부부에 의한 자녀 살해 및 유기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다루었다. 이 기사와 함께 해당 부모의 사진이 6장 실려 있었는데, 여기에는 남편 갑의 사진, 부인 을이 1994년 12월 5일에 사망한 아들 루빈(Lubin)에게 수유기를 물려놓고 있는 사진, 부부의 결혼사진 및 을 부인이 경찰에 인도되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부부의 과거 모습을 담은 사진들은 과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해당 부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원심 판결은 사진들이 갑과 을의 소송, 아이의 죽음의 상황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사건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며, 따라서 <파리 마치>가 합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미지들이라고 보았다. 특히 아이에게 수유기를 물려주고 있는 사진이나 결혼식 사진은 <파리 마치> 뿐 아니라, 당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프랑스의 거의 모든 매체들이 게재하였던 것

12)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2, audience publique du 30 juin 2004.

으로, 이는 이들 부부의 사생활과 두 사람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대중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대법원 역시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2004년 11월 15일에 내려진 판결에서는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 당사자들의 가족생활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갑 혹은 을의 사생활이나 어떤 권리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sup>13)</sup>

- 시사주간지 <파리 마치>는 1999년 12월 30일자에서 당시 대규모 부정회계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던 엘프(Elf)사의 대표 이사의 근황을 담은 사진을 게재한 바 있다. 사진 속의 인물은 부친상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자신도 모르는 새 촬영되었다는 이유로, 초상권 침해 소송을 법정에 제기하였다. 베르사이유 지방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원칙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며, 따라서 그 사진의 복제 및 이용에 항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이 근본적으로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와 연관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 2004년 6월 30일,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해당 간행물 속에서 사진들은 단순히 원고 갑의 얼굴을 확인(identification)시켜주는 것이고, 사진을 설명하는 기사들 속의 정보들은 최근 갑이 연루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 의거, 갑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비록 갑의 공적인 행위와는 상관없는 상황에서 촬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사진 출판은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sup>14)</sup>

### (3)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이미지의 출판에 대한 제한

이처럼 최근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비추어 개인의 '초상권'에 대한 법규 적용을 점차 사례별로 상세하게 판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해당 이미지가 당사자의 '인격적 존엄권'과 관련된 경우에는 과거의 엄격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 역시 강조될 필요가 있다. 만약 특정 이미지의 출판으로 인해 당사자의 인격적 존엄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는 모든 출판은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다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 2000년 6월 13일, 16세 소년 로맹(Romain)이 스쿠터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였다. 그 다음 주 주간지 <파리 마치>는 "고속도로, 잊혀진 전쟁"이라는 제목 하에 이 16세 소년의 사연을 다루었다. 여기에는 들것에 실린 채 얼굴이 피범벅이 된 한 소년의 시신이 바삐 움직이는 구조요원들의 움직임 사이로 클로즈업되어 있는 사진이 게재되었으며, 사진 아래에는 "그는 스쿠터로 폭주했다. 그는 16살이다. 의사들이 그를 살려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소년의 유족 X는 이 사진이 죽은 아들 로맹의 존엄성을 훼손하였다며, 잡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4년 11월 4일 프랑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잡지사가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할 것을 최종 결정하였다. 정보를 제공할 자유라는 권리는 개인의 권

13)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1, audience publique du 25 novembre 2004.

14)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2, audience publique du 30 juin 2004.

해당 이미지가 당사자의 '인격적 존엄권' 과  
관련될 경우, 프랑스 법원은  
과거의 엄격함을 그대로 유지해

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며, 해당 기사는 사실 보도 및 사회 현상에 대한 설명의 적절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얼굴이 피범벅이 된 희생자의 모습을 다루면서 당사자의 '의명성'을 유지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 역시 일종의 사생활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설사 언론 자유의 원칙은 사회 현상의 보도에 있어 이미지의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를 포함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sup>15)</sup>

- 잡지사 코지프레스(Cogedipresse)와 HFM은 1998년 2월 6일, 프랑스 남부의 코르시카 섬에 있는 아자시오(Ajaccio)에서 코르시카 분리주의자 테러집단에 의해 도로변에서 살해된 아자시오 경찰서장의 시신이 쓰러져 있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출판한 것과 관련, 유가족들로부터 사생활 침해 혐의로 소송을 당하였다. 당시 원심 판결은 역시 민법 제9조에 의거, 출간된 사진이 살해된 아자시오 경찰서장이 도로변에 시신으로 쓰러져 있는 모습과 그의 얼굴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그러한 출판은 불법이라고 판결하였다. 이들이 발행한 잡지 <VSD>와 <파리 마치>는 게재 및 판매 중지를 명령한 파리 지방법원의 결정에 맞서 "언론 자유와 대중의 알 권리"를 내세우며 이를 항소하였다. 당시 두 잡지사가 독자들에게

고지한 항소 이유서에 따르면, 1) 해당 사진의 보도는 민법 9조에서 요구하는 조항에 저해되지 않으며, 2) 유가족들의 "감정적인 요소"를 침해하였을 뿐,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3) 해당 출판물은 독자들에게 대한 정보 제공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이는 유럽 협약 제10조에도 규정되어 있는 기본적 자유의 차원에서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2004년 11월 4일자 대법원 판결은, 우선 1심과 2심에서 과연 독자의 알 권리가 해당 사진의 출판을 정당화하는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검토가 결여되었음을 비판하였다. 만약 설사 독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요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건에서와 같은 형태로 당사자의 모습이 그의 '존엄성'에 해가 될 정도의 사진일 경우에는 합법적 출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 판결을 통해 설사 사건 보도에 부수적인 클리셰(cliché)라고 하더라도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확립된 셈이다.<sup>16)</sup>

결국 프랑스의 법정은 독자들의 알 권리가 과연 해당 사진의 출판을 정당화하는지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토를 요구하였으며, 언론사가 독자의 알 권리를 이유로 희생자의 존엄성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하였다. 이를 판정하기 위해 재판부는 해당 출판물·프로그램 속의 사진·영상 이미지와 이것과 결합되어 있는 기사의 내용에 대해 보다 주

15) Chambre civile 2, audience publique du 4 novembre 2004.

16) Chambre civile 1, audience publique du 20 décembre 2000. 그렇지만 이 재판 결과에 대한 반론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는 지난 수년 동안 대법원이 '언론 자유'와 '초상권 보호' 사이에서 채택해 온 사안별 특수성의 원칙에 비추어, 다소 일관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못지않게, 희생자가 공직자(경찰서장)였으며, 또한 이미 죽은 사람인 경우에도 초상권 보호가 성립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논쟁을 낳기도 하였다.

목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해당 이미지가 과연 해당 기사에 비추어 적절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별 검토가 판례의 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셈이다. 그 과정에서 프랑스의 재판부는 과거와 달리 사생활 및 초상권 보호에 절대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기 보다는, 변화한 환경에 맞추어 언론 자유의 영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바로 2000년대 이후 '언론 자유의 권리'에 대한 프랑스 법정의 보다 유연한 태도 속에서도, 예외적으로 과거의 엄격함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영역임을 우리는 쉽사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4. 마치며

지난 2004년 6월 24일 유럽 인권법정(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은 개인의 초상권과 공익과의 관계에 대한 유명한 판결 - 흔히 '하노버 판결'이라고 불린다 - 에서,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들을 천명한 바 있다. 그 중 다음 조항들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 1) 이미지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지만, 그 등급이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타인의 권리 역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 2) 이미지가 과연 공익에 대한 토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공익에 이바지하는 이미지 - 즉 민주주의적 토론에 기여할 수 있는 이미지 - 와 단지 사생활에 관련된 이미지는 구분되어야 한다. 3) 대중의 알 권리(le droit du public à être informé)는 "특수한 상황에서 공인의 사생활 측면에 관한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일부

대중(certain public)'의 호기심에 관한 것에 그치는 것은 여기서 제외된다.<sup>17)</sup>

유럽인권법정은 초상권 혹은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인 수많은 언론 보도를 둘러싼 논의에 있어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이 주장하는 "독자의 알 권리"가 과연 민주주의적인 사회적 토론의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대중은 알 권리가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본질적인 권리이다. 이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공인 - 특히 정치인 - 의 사생활의 측면까지도 포함된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들의 사생활 전부가 정치적 토론, 혹은 공적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를 거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소송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유럽인권법정의 이러한 입장은 이 글에서도 언급된 2001년 이후 프랑스의 재판부가 발표한 일련의 판례들 속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프랑스 사회는 오래 전부터 개인의 사생활 보호 그리고 초상권 보호에 대단히 큰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가장 엄격한 처벌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프랑스 사회 역시 미디어의 발전과 이에 따른 대중적인 '수요'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란 역시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2001년 이후 프랑스 사회는 이 문제를 과거의 판례들에서 벗어나 대중의 알 권리와 초상권 보호라는 두 가지 원칙 사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과거와는 달리 사안별로 대중의 알 권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받는 사

17)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Affaire von Hannover c. Allemagne*, requête n° 59320/00, Strasbourg, Le 24 juin 2004 (<http://www.echr.coe.int/echr/>)

초상권 보호와 알 권리의 양자 사이에서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답안 내놓기 위해 프랑스 사회는 고민 중

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룹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인격권, 인격적 존엄권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 수단을 마련하는 경향이다. 유럽인권법정의 2004년 판결은 결국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이 두 가지 요구들 사이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원칙적 판단에 관한 코멘트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의 초상권 관련 판례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하여 변화한 시대적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답안을 내놓기 위한 기나긴 모색의 과정에 들어서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

〈참고 자료〉

- Bigot, Christophe, ed., *Médias et vie privée*, in *Problèmes politiques et sociaux*, n° 940, Septembre 2007,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 "Droits sur l'image des personnes : Une matière réorganisée", in *Gazette du Palais*, 18-19 mai 2007, pp. 9-17.
- Dumas, Dumas, *Le droit de l'information*, Paris, PUF, 1996.
- Gaillard, Emmanuel, "La double nature du droit à l'image et ses conséquences en droit positif français", *Recueil Dalloz Sirez*, Chronique-XXVI, 1984, pp. 161-162.
- [www.legifrance.fr](http://www.legifrance.fr)